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어촌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 정의 및
지원규정 신설〉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017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농어촌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 정의 규정 신설	2
2. 농어촌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 지원 근거 마련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옥주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7. 16.
3. 회 부 일 : 2026. 7.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가.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추진, 운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시설 설치·운영, 지역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계통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다. 사업의 지정, 수익의 사용,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농어촌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 정의 규정 신설

개정안은 ‘농어촌마을공동체’를 농어촌지역 주민이 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체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농어촌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에 참여하여, 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농어촌마을공동체의 복리 증진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농어촌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제3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u>농어촌마을공동체</u> ”란 농어촌지역 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체 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8. “ <u>농어촌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u> ”이란 농어촌지역 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에 참여하고, 사회적 환원을 위해 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배분, 농어촌마을공동체의 복리 증

현행	개정안
<신설>	<u>진 또는 지역공동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u> <u>제23조의2(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

또한, 2026년 4월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5월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 또는 이에 연접한 읍·면·동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특정 재생에너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의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수익을 개별 주민에게 배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의 입지 및 자원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재생에너지사업에 마을공동체가 참여하고, 그 수익을 주민의 소득 증대와 공동체의 복리 증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농어촌마을공동체’를 협의체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사업은 발전설비의 설치·운영, 자금조달, 전력판매 및 수익 배분 등을 수반하므로 사업주체의 법적 책임과 재산관계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인격이 없는 협의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주민이 공동으로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발전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농어촌마을공동체’의 범위를 협동조합 등 법인격을 갖춘 조직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의 ‘농어촌마을공동체’라는 명칭만으로는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농어촌재생에너지공동체’ 등 해당 공동체의 목적과 성격이 드러나는 용어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농식품부는 마을공동체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사항은 「재생에너지법」, 「영농형태양광법」 등 기존 법률에서 기규정하고 있어, 별도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2. 농어촌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 수립, 설비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수익의 사용·관리 및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3조의3(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 <u>1.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조사</u> <u>2.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절차</u> <u>3.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u> <u>4. 주민참여 및 공동체 조직의 구성·운영</u> <u>5. 전력계통 접속·연계 우선 검토 및 사업성 확보</u> <u>6. 시·군 및 시·도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지원센터 설치·운영</u> <u>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u>야 한다.</u>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성과, 주민참여도 및 지역환원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농어촌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경제성 검토, 부지 확보, 각종 인허가, 자금조달 및 전력계통 연계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전문적인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고, 다수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의 특성상 주민 간 의견 조정과 수익 배분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업은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그 수익을 주민소득 증대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익의 사용내역과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이 사업의 추진 및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의 지정, 수익의 사용·관리, 운영실적의 보고 및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체계성을 높이고, 공적 지원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며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23조의3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부지 확보, 설비의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 등 발전사업자가 통상 부담하는 사항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측면이 있음.

또한, 전력계통 접속은 계통 여건과 접속순서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검토’가 특정 사업에 접속상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 「전기사업법」상 부당한 차별 금지 원칙과 상충할 소지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지원센터의 기능이나 설치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시·군 및 시·도 단위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별 사업 수요와 관계없이 센터가 설치될 경우 지속적인 인력·운영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 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23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사업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이 되는 반면, 수익의 용도 제한과 운영실적 보고 등의 의무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정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따라서 주민참여 정도, 사업수익의 지역환원 등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과 지정취소 사유는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업수익의 배분·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사업수익을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농어촌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면서, 수익의 배분·적립·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익의 배분과 사용은 사업에 참여한 주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고, 주민에게 직접 배분할 수익과 공동체를 위하여 적립·사용할 수익의 비율 등에 따라 사업의 지역환원 효과도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수익의 배분·적립 및 공동체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은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사업수익을 주민의 소득 증대 및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익 사용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수익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과 함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의 중단·환수 또는 지원사업 지정취소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안 제23조의6은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실적 및 수익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보고 대상 기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고 대상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농식품부는 마을공동체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재생에너지법」, 「영농형태양광법」 등 기존 법률로도 추진 가능하므로, 별도 입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²⁾

문 의 처
02)6788-5415

2)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